■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4. 9.>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 ]증 설 / [ ]이 전 / [ ]업종변경 /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수수료 없음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기업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일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활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나.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함(「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없음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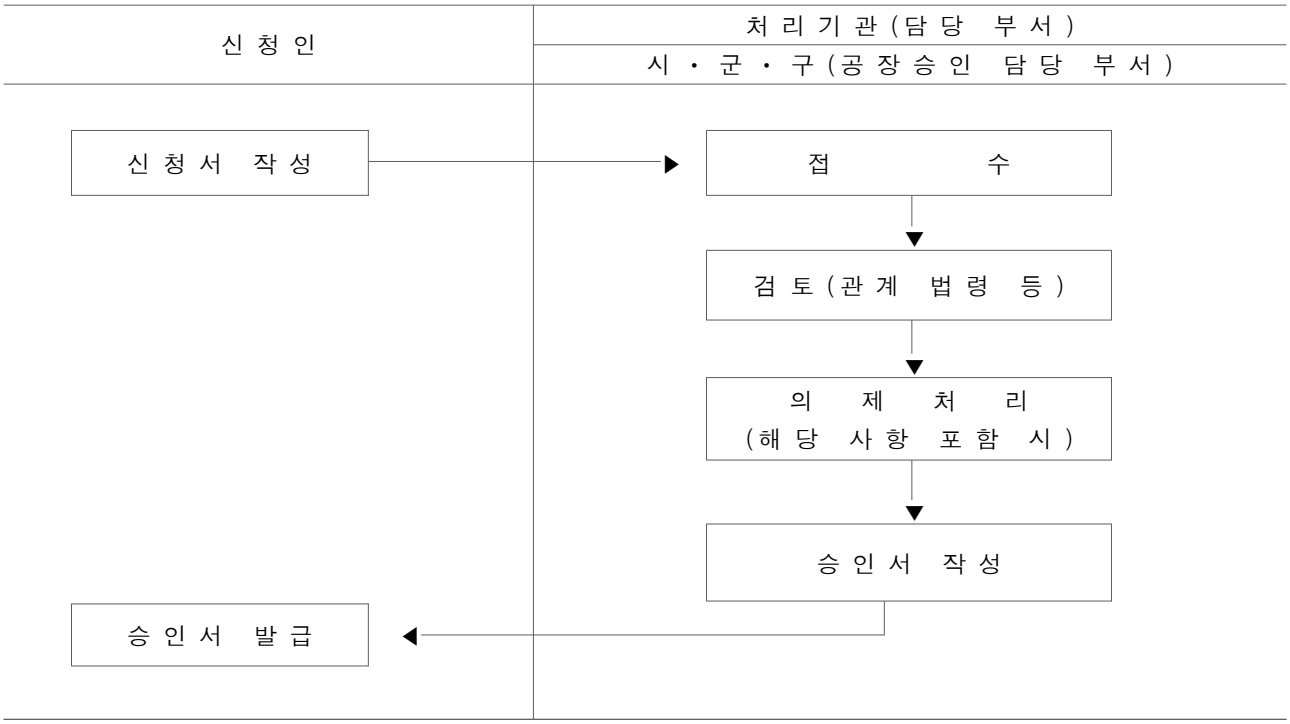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